

평창장애포럼 2021

”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지 않는다“, 2021.3.10.

유카 콤푸부오리

장애인권활동가, 변호사, 핀란드 콤푸부오리 로펌 대표

시설은 정답이 아니다

핀란드의 코로나19 봉쇄조치의 함의

-시설이란?

- 핀란드 시설 사례

- 코로나19에 따른 락다운(Lock-down)

- 정치적/법적/정치-법적 권익옹호

- 장애인단체와 협의할 의무

-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향하여

- ❖ 핀란드: 장애인 거주 시설 여전히 존재. (시설: 장애인이 같은 집에서 통제 하에 거주하는 공간)
- ❖ 24시간 지원이 필요하다면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핀란드 장애인들의 현실
- ❖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, 핀란드에는 훌륭한 장애인 지원법이 있으나, 그 법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지 않음.
- ❖ 2020년 3월,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 거주자 방문/외출이 금지됨
- ❖ 친척, 가족, 친구 및 독립 인권 감시단의 방문 금지 → 장애인의 고립 심화 및 지원 부재, 시설 내 인권침해 감시 불가
- ❖ 거주인의 외출 금지 → 당사자 고립과 불안감 증대
 - 사례: 매일 시립 복지관에 가서 주간활동을 하는 자폐성 장애인이 외출 허가를 요청하자 "지금 나가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다"고 통지함. 외부 활동 차단에 따라 불안감 고조, 자해 행동 보임
- ❖ 장애인 시설 봉쇄(락다운) 조치는 핀란드 국내법/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→ 핀란드 정부의 시설 봉쇄 조치 행정소송 진행 → 핀란드 최고행정재판소는 '봉쇄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실행되었다고 판결
- ❖ 법적 근거도 없이 장애인을 시설 안에 가둬두는 것이 정부에게 너무 쉬운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큰 우려
- ❖ 이후 워킹그룹이 구성되었으나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음. 의사결정시 장애인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의무(UN CRPD 33조) → 워킹그룹에 장애인단체포함을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취했고, 장애인단체가 포함되었음

- ❖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에는 정치적(political)/법적(legal)/정치-법적(polegal) 활동이 있음
- ❖ 정치적 활동: 대부분 장애인단체들이 취하는 전략. 정치인 로비/미디어 활용 등
- ❖ 법적 활동: 장애인 차별 사안 소송/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활동/법률전문가 장애인단체 파견 등
 - 법률 활동에는 지역/국가/국제적 활동이 있음
- ❖ 정치-법적 활동: 법률적 활동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, 정치적 활동을 통해 법률 활동을 확대
 -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, 정부에 맞서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저항감이 많음. 이들에게 법률 활동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알리고(정치적), 법률활동을 지원하는 것(법적)이 정치-법적 활동
 - 아무리 작고 약한 개인이라도 법을 이용해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음
 -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법률활동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. 우리에게 어떤 도구(=법률)가 있는지,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고 당사자의 법률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단체들이 수행할 필요 있음